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6호)

심사보고서

1997. 6. 1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6. 12 고성군수
- 나. 회부일자 : 1997. 6.
- 다. 상정·의결일자 : 1997. 6. 17 상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성군주차장조례 내용의 보완

나. 주요골자

-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 세분화 함.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행위 제한 등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 부과규정을 개선 보완함.(안 제3조제2항)
- ③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 차량을 종전에는 장애인수첩 소지 자가운전자,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한하여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경승용차 등으로 확대함.(안 제4조)
- ④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안 제12조, 별표 10)
- 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종전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영주차장의 노상, 노외 주차장을 구분하고 주차시간의 사용료를 10분단위 누진계산하도록 하므로써 주차요금의 이해를 증진시켜 민원을 예방하고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국가유공자직접운전 자동차 등에게는 주차요금의 경감또는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의 내용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 질의 : 위탁관리자의 반대의견은 없을 것인가
- 답변 :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의가 없음.

- 질의 : 기준초과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산정방법은
- 답변 : 기준 30분에 초과 10분단위 계산하도록 하였음.

- 질의 : 준농림지역내 주차장설치 가능한가
- 답변 : 전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함.

5. 토 론 : 없음.

6. 심사결과

- 1996. 6.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